

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02. 5. 17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5. 17

다. 상 정 일 자 : 제 101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 1차 총무위원회(10.21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장일룡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제77조, 같은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국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하여 문화회관 및 을숙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지 번 : 사하구 하단동 1149-11번지
- 지 목 : 잡종지
- 매입(예정)면적 : 26,976㎡ 중 1,080㎡
- 공시지가 : 85,100원/㎡
- 매입예정금액(소요예산) : 110,000천원(공시지가의 120%)
- 현소유자 : 한국수자원공사

3. 관계법령 및 조례

- 지방재정법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(공유재산관리계획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을숙도문화회관 준공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확장공사(L=432m)를 시공함에 있어 문화회관 경계지점에서 확장구간 종점부까지의 구간(L=80m)이 우리구와 수자원공사간에 체결한 “토지무상사용 계약” 외 구간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무상 사용은 불가하므로 우리구에서 유상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
- 계획된 구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해당토지(1,080㎡)를 매입하여 문화회관 개관전에 부대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같이 통과시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